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5. . .

의결 사항

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의연월일	2025. 7. 24.
제 의 자	의 장

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의연월일: 2025. 7. 24.

제 의 자: 의 장

1. 제의 이유

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간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나. 위 원 수: 9명

다. 활동내용

- 우리시 해평취수원 활용 방안
- 해평취수원 사용에 따른 우리시 대응과 정부·대구시와의 협력 방안
- 문화선도산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
- 문화선도산단 추진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
- 도시 및 공단 등 재생 사업의 활성화 방안

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9조(위원의 선임)

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○ 위원 명단

(성명 가나다 순)

소속 상임위원회	성 명	비 고
	9명	
기획행정위원회 (3)	김 근 한	
	김 민 성	
	이 명 희	
산업건설위원회 (3)	김 원 섭	
	김 춘 남	
	정 지 원	
문화환경위원회 (3)	김 영 길	
	김 영 태	
	이 정 희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6.15.>